

부산광역시사하구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사유

- 2000. 10. 1 생활보호법 폐지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
본 조례의 관련조문을 새로이 시행된 법 규정에 맞게 정비 및 일부
불합리한 내용을 삭제 또는 보완하여 장학기금 관리 및 집행에
철저를 기하기 위함

2. 관계법령

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

3. 주요골자
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명칭 변경
-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정확성 및 객관성 부여

4. 검토의견

본조례 개정건은

- 2000. 10. 1부로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개폐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법규정에 맞게 명칭과 용어를 적의 조정하고 일부 불합리한 규제내용을 삭제 보완하여
- 장학기금 신청 참여범위를 확대, 기회를 균등히 하고 수혜의 폭을 넓혀 열린행정, 열린복지의 기본대강을 마련했다고 판단됨

따라서 본조례개정은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됨.

2003년 6월

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 금 배